

## 계절수업 운영 규정

제정	2004. 3. 1
개정	2004.12. 1
개정	2012. 7. 1
개정	2016.10. 31
개정	2017. 3. 1
개정	2017. 6. 1
개정	2017. 9. 25
개정	2019. 11. 18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절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"계절수업"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(이하 "정규학기"라 한다)와는 별도로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수강대상)**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.

**제4조(개설과목)** ① 계절수업의 개설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.(단,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이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폐강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.)

**제5조(수강신청 및 수강취소)** ① 수강희망 학생은 수강할 교과목을 매학기 공지되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계절수업 개강 전 수강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한다.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이후 총 수업시간 1/4이전에 취소할 경우, [별지 1]의 수강신청 취소원을 작성하여 계절수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와 동일한 등록금 반환규칙을 적용한다. 총 수업시간 1/4이후에는 수강을 취소할 수 없다.

**제6조(교과목의 재이수)** 계절수업에는 성적이 C+ 미만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업)** ① 계절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**제8조(수강료)** ① 계절수업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계절수업 수강신청 안내 시 공지한다.

② 학생은 계절수업 등록 시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료는 결석 등으로 인하여 감액,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단, 개설 취소된 교과목의 수강료는 환불한다.

**제9조(학점)** ① 계절수업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② 매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. 단, 현장실습 교과목은 취득가능학점에 합산하지 않는다.

③ 계절수업의 학점비율은 하계 계절수업은 1학기 비율에 합산하며, 동계 계절수업은 2학기 학점비

율에 합산하여 대학전체로 산출 할 수 있다.

**제10조(강사위촉)** 계절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은 개강 전에 강사를 위촉하여야한다.

**제11조(강사료 지급)** 신규강사와 전임교원의 경우, 학기 중 강사료 지급기준(B등급)에 따라 지급하며 출강이력이 있는 강사의 경우, 가장 최근의 취득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. 단, 수강생 수에 따라 강사료 변경이 가능하며, 사이버 강좌의 경우 강사료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성적평가)** 학칙 제31조 및 동시행세칙 제27조에 의한다.

**제13조(성적처리)**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칙에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하되 정규학기 평균산출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, 전체성적(졸업학점)의 평점평균에는 산입 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# 별지 1) 수강신청취소원

# 수강신청취소원

학생인적사항					
스쿨(학과)명			전 공		
학년			학 번		
성명			연락처		
개설학년도	학기	개설대학	교과목명	학점	비고
등록금 환불계좌 (해당자)	은행명			예금주	
	계좌번호	( 본인 외 타인 명의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증빙)			
	등록금 환불금액	(등록금 담당자 기입)			
환불사유 ★필수표기					

위의 사유와 같이 수강신청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၁၀၁

수강신청학점	취소학점	취소 후 학점

신청인 (인)

#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